천안역 필하우스 에듀시티 2단지 민간임대주택 입주자(임차인)모집공고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공 급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로66 천안역 필하우스 에듀시티2단지 (문성원성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공 급 대 상 : 지하3층 지상 최고 28층 16개동 중 민간임대 6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임대세대 203동, 지상17층 중 1~17층) 중 우선공급 3세대 일반공급 15세대
- 임대사업자 : 문성원성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시 공 자 : ㈜ 한성건설

구분	청약신청		당첨자 발표	계약진행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선정방법
	일시	장소		일시	장소	
우선공급 (선착순)	2024.09.27.(금) ~2024.09.28.(토)	● 현장신청→임대사무실	개별안내	2024.09.27.(금) ~2024.09.28.(토)	<임대사무실> 천안시 동남구 성황로66, 천안역 필하우스 에듀시티 2단지 203동 1층 임대사무실	대상자 개별 안내
일반공급 (청약홈)	2024.09.25.(수)~10.02.(수) 09:00~17:3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5영업일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PC: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청약홈 어플**	**2024.10.10.(목)16:00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PC: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청약홈 어플**	**2024.10.11.(금) ~2024.10.13.(일)**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의해 신청타입별 무작위 결정**
현장공급	2024.10.25.(금) ~2025.10.26.(토)	● 현장신청→임대사무실	개별안내	2024.10.25.(금) ~2024.10.26.(토)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당해 주택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가입을 이미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완료하였습니다.**(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

구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단위 : 원)	보증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보증	제06812024-703-0000042호	₩8,439,200,000 (각 세대별 임대보증금 전액)	임대계약기간 (1년마다 갱신 예정)

임대보증금보증

보증서번호 제 06812024-703-0000042 호 보증서출력번호 2024-0681-00060398

보증금액	일금	팔십사억상천구백이십만원정 ₩8,439,200,000—		
보증기간	2024 년 07 월 15 일부터		2025 년 07 월 14 일까지	
사 업 명	천안 문성원성주택재개발 신천안 한성필하우스 에듀타운(2단지)			
보증채권자	임차인			
주채무자	상호	문성.원성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채윤기
특기사항	1. 보증회사는 첨부 임대보증금 세부산출내역상 등 · 호수별로 구분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에서 지정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계좌 : 100-033-724421 신한 문성원성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13:3. 공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단에 기재된 보증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위한 보증료가 미납될 경우에는 보증책임이 소멸하므로 매년 보증료 납부 등의 갱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보증발급 시 설정된 저당권(구입대주택법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기금 융자금) 이외의 저당권 설정 및 권리제한 사항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보증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며, 입주일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의 전입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는 때(법인인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 년 08 월 07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유병태

대리인 충북지사장 김기

담 당 자 : 윤현석
전화번호 : 043-913-204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1203호 (강서동)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주택도시보증공

임대보증금보증서 번호 제 06812024-703-0000042 호 보증서출력번호 2024-0681-00060398 호

법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사용검사후)

제1장 보증계약의 내용

제1조(보증계약의 내용)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해제, 해지 등 사유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보증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range 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서면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줌.
2. 공사와 신탁등기된 임대주택(이하 "신탁등기" 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환매권자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이라 한)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에 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갑 중에서 임대주택(부대)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을 말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부대별 보증금의 마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금액】 보증서에 적힌 서면별 보증금액을 말합니다. 보증금액은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으로 하되, 민간임대주택법 제4조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우에는 당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전환】 민간임대주택법 부칙<2016.8.25.> 제6조 제2항에 따라 구(舊)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우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채권자가 제4조제1항제8호의 보증사고 발생 이후에 주채무자에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사유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5. 보증채권자가 귀책사유 없이 보증금 전액을 되돌려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이익 · 비용 · 그 밖의 손해채무
6. 주채무자가 매출변동, 차용, 이익저하, 설비 구축하지 않은 영목상 임차인 등 정당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7.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8. 보증서 발급 시 보증조건과 다르거나 보증조건을 공사의 동의없이 임의변경하여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9. 임대보증금을 담보한 필요비 · 유익비 등의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발급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증거를 발급 후에 그 납부증거 훼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보증금을 넘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4. 보증채권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사의 구상권 행사(권리결차에서 우선변제권 행사 등)가 제한되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나. 임대차계약 계시일(계시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말함)까지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갖추어 법인인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포함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어야 할 때도 그렇지 못한 경우
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이후 거주이전 또는 다수소기 건강상고 등으로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15.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 질권기관 담보제공, 제3자로부터의 압류 · 가압류, 견부 · 추심명령 등으로 인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6. 보증채권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 등에 따른 배당요구, 청권신고 등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임대보증금반환청권을 행사 또는 보전하지 않아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7. 보증채권자가 제8조(보증채권자의 협력의무 등)를 위반하여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8. 보증채권자가 제10조(대위 및 구상)의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9. 보증서 발급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보증서 발급 시의 보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주채무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가. 주채무자가 저당권 등 당보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모든 당보권 설정금액의 합계액이 보증서 발급 시 주택가액의 80%를 초과하게 된 공우
나. 주채무자가 저당권 등 당보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모든 당보권 설정금액의 합계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보증서 발급 시 주택가액을 초과하게 된 공우 (다만, 주택가액 초과금액에 대하여 당보를 제공한 경우 등 금액을 당보권 설정금액에서 공제함)
다. 임대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20.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제3조(보증채권자의 협력의무 등)

①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사전동의 없이 주채무자 등으로부터 저당권 설정 등의 요청에 응하지 말아야합니다.

② 보증사고가 발생한 공우에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보증채권자는 공사에 신탁등기 된 임대주택의 공우에는 보증사고 발생 이후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공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의 변경의 공우.
2. 주채무자, 보증채권자, 연대보증인의 주소가 변경된 공우
3. 공 · 공여의 거시설정, 청권신고, 배당요구 등 공 · 공여 관련사항을 통보받은 공우
4. 보증사고가 발생한 공우
5. 보증사고 사유가 없어진 공우
6.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공우
7.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의 부도 · 파산, 사업포기 등의 사실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공우
8. 임대보증금반환청권을 양도 또는 당보로 제공하거나 임대보증금반환청권에 제3자로부터 압류 · 가압류, 견부 · 추심명령이 있는 공우
9. 그 밖에 공사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공우

⑤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임차목적물의 권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또는 회생절차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 등에 따른 당당요구, 청권신고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청권을 보전 또는 행사하여야 하고, 공사가 구상청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⑥ 보증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사에 손해를 끼친 공우에는 공사는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range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

제4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우를 말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해제, 해지 등 으로 종료(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 행사 등으로 계약이 갱신된 공우에는 갱신계약이 종료된 공우를 말함)된 후 20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공우
2.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채권자가 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지 못한 공우
3. 주채무자가 파산 · 부도, 사업포기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여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알린 공우

② 제1항 제1호의 보증사고에 있어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이 갱신(묵시적 갱신을 포함)되지 않은 공우에 한합니다.

③ "보증사고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공우에는 보증사고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항 제3호의 공우에는 주채무자의 파산 · 부도,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가 경수되어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날

④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후 공사의 보증이행 없이 해당 사고사유가 없어진 공우(2차 이상의 보증사고 발생시 그 보증사고 사유 견부가 없어진 공우)에는 그 보증사고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법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사용검사후)

【해당 사유】 제4조 제1항 제1호의 '해당한 사유' 란 시설물 현상복구비용,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정산 합의가 이루어 지기 않아 주택부자가 임대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목시력 경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12.10. 전에 체결 또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2020.12.10. 전에 체결 또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 민법상 약정 및 법정해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경과에서 배당요구에 따른 해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보증채권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민법」 제6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6에 따라 주택임차권등기를 한 후(임차목적물의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임차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 또는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한 임차인인 경우 제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하며, 법인인 보증채권자는 공사를 통과하지고로 하는 전세권의 권리이전 부기등기를 완료한 이후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필요한 서류의 첨출을 요청하거나 공사가 당보로 설정한 담보물의 교부 · 이전등기 등 권리의 실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합니다.

③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 합니다.

제7조(보증채무 이행청구시 제출서류)

①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신분증 사본
3. 보증서 또는 그 사본(공사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4. 내용증명우편 등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그 사본
6.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7. 전세권 부기등기(공사를 등기권자로 하는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 또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다만, 신탁등기 또는 분양전환의 경우에는 제외
8. 명도확인서 또는 퇴거여정확인서(일부보증 또는 분양전환의 경우에는 제외)
9. 배당표 등 임대보증금 을 받기 못한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경 · 공매 등 절용시)
10. 계좌입금의뢰서 또는 보증채권자 명의의 통장 사본
11. 기타 공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임대차계약과 관계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 합니다.

③ 보증채권자가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서류 중 일부를 누락한 이행을 청구한 경우 공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러한 명의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의미함.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사고일로부터 5개월 이내(단, 주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6개월)에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을 결정하여 보증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립니다.

1.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사업의 경우로서 신탁등기의 경우 : 공사가 환급액 또는 분양전환 중 하나의 이행방법 선택
2. 제1호 이외의 경우 : 환급이행

② 환급이행으로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을 결정한 경우 공사는 제1조 제1호의 환급금액(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뺀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위약금
2. 임대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 관리상의 비용(관리비 및 도시가스비 등의 미납금,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임대주택을 훼손 또는 확산한 경우 시설물 현상복구비용 등 손해배상금),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인해 공사가 부담한 비용
3.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 해당 임대주택의 양수인 또는 해당 임대주택의 권리 또는 공매절차 마친 이후 보증되지 않은 임대보증금을 넘어 초수한 금액

③ 보증채권자가 공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보증채무 이행금액에서 상계합니다.

④ 임대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면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금융기관(보증기관 포함) 등에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또는 제3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압류 · 가압류, 전부 · 추심명령 등이 있는 경우 보증회사는 금융기관의 청구로 공사와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융자채무 등을 금융기관 등이 우선 지급한 후 잔여금을 제3항에 따라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필서에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1. 대위변제증서
2. 보증채권자가 제6조에 따라 이행청구를 한 경우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 위임장, 임차권등기 결정서 등본, 인감증명서 등). (일부보증 또는 분양전환시 환급이행의 경우 제외)
3. 공사가 제12조에 따른 공사의 권리를 보전 또는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등)
4. 공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⑥ 보증채권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을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보증채권자와 합의한 가격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 보증채권자에게 대환되는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융자금이자는 제외함. 이하 같음)을 뺀 금액을 넘는 임대보증금과 제1조 제1호의 환급금액 중 작은 금액에서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뺀고 지급합니다.

⑦ 공사가 신탁등기의 경우로써 제1조 제2호의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경우 보증채권자는 보증회사에 해당 임대주택을 인도하여 하고, 공사는 그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제1조 제2호의 임대보증금에서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뺀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분양전환할 경우에는 제1조 제2호의 임대보증금에서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뺀고 남은 금액을 넘는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가격에서 대환되는 주택도시기금을 뺀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주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보증채권자가 공사에 납부하여 합니다.

【환급이행】 보증사고시 보증서에 의한 서면상 보증금액 한도 내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되돌려주어 임대보증금을 확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8조(보증채무의 이행기한)

① 공사는 환급이행의 경우 제6조에 따른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명도와 동시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제1조 제1호 제1호의 경우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내(단,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 적용 제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명도와 동시에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 및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무를 다한 날에 이행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봅니다.

1. 임차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
2. 임차목적물에 대한 점유상황
3. 임차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비용 추정. 임대보증금이 없는 월세계약의 경우 연체임차료 추정 등 주채무자의 보증채권자에 대한 확정권 또는 보증채무 이행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
4. 약관에 따른 면책사항 해당 여부
5. 그 밖에 이행심사에 필요한 사항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일】 제7조에 따라 공사가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을 결정하여 보증채권자에게 알린 날을 말합니다.

② 공사는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 후 주채무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보증채권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사고가 접수되는 등 보증채무의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유보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마치지 못하는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금액을 지급하거나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의 거절 또는 유보결정을 알립니다.

제8조(지체배상금의 적용)

환급이행의 경우 공사가 제6조에 따른 이행기한에 정당한 사유없이 환급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대상금액에 대하여 그 익고일수(이행기한 다음 날부터 환급일까지의 해당 일수)에 환급시점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지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10조(분양절차 등)

분양전환을 위한 절차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등 협의가 필요한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에 따른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를 협의당사자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성된 협의 및 구성관련 운영사항(최의록 등)을 제출하여 합니다.

제11조(임차목적물의 명도확약)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이행금을 받을과 동시에 주채무자에게 임차목적물을 명도하여 합니다. (일부보증 또는 분양전환의 경우 제외)

② 보증채권자가 제1항의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받은 보증이행금을 공사에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③ 보증채권자는 보증이행금사를 마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하여야 합니다.(일부보증 또는 분양전환의 경우 제외)

임대보증금보증서 번호 제 06812024-705-0000042 호 보증서출력번호 2024-0681-00060398 호

법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사용검사후)

제12조(대위 및 구상)

①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에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지체 없이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 합니다. 공사는 보증채무의 이행 전이라도 서류 제출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공사는 보증채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게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써 공사가 보증채권자인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채무자인 주채무자 등에게 권리를 행사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9장 보증채무의 성립과 효력

제13조(보증채무의 성립 및 확정)

① 공사의 보증채무는 보증서발급일에 유효하게 성립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주채무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완료할 것
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개시일(개시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말함)까지 해당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을 마치고, 해당 주택임대차계약서(임대 · 경신계약을 포함)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것(법인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칠 것)

② 보증서 발급 이후에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승인일 또는 변경 허가일 이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공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14조(보증조건의 변경 제한)

① 주채무자 및 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는 보증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보증조건의 변경은 공사가 변경사항을 주채무자 및 보증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증서의 보증조건을 정정하여 재발급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보증조건】 보증서에 적힌 보증금액, 보증기간, 주채무자, 임차목적물, 임대보증금, 담보권 설정금액 및 보증 특기사항 등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15조(사기행위에 대한 특례)

① 공사는 주채무자, 보증채권자 또는 대리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증채무 이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기행위와 관련된 제1항의 자는 보증이용이 제한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16조(부당이득 반환)

① 공사가 지급한 보증채무 이행금이 이 약관에 따른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추후 확인될 경우 보증채권자는 그 해당금액 및 법적조치 비용 등을 공사에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공사 및 주채무자 등으로부터 이중으로 변제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는 즉시 공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공사에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제17조(양도 및 질권설정 등 금지)

①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이 보증상의 권리 또는 보증서를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보증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공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채권의 양도를 공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보증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8조(보증채무의 이행장소)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로 합니다.

제19조(통상 및 도난)

보증채권자는 보증서를 분실 · 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에 신고하여 합니다. 공사는 보증채권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아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0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공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함)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공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제21조(약관의 해석)

① 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증채권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공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공사는 이행하지 않는 한부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 공사는 보증의 유지, 권리, 이행과 지급 및 대위권 행사 등을 위해 (신용)정보주체 및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 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법원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회원 ·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회원 ·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② 공사는 보증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 당해 주택은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입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자는 2024년 09월 20일이며, 이는 청약자격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청약자(또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신청시 유의사항

■ 당해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공급자는 문성원성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사업주체"라 함)이며, 당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입주지정기간은 10년간 임대(장기민간임대주택)합니다.

■ 당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계약자와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전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주 전 임차인이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 및 전대한 경우 그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입주 후 임차권을 양도 및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며 임차인에게 위약금으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임차인은 강제 퇴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 사업시행인가 시 확정된 임대주택공급대상자에 우선공급하고 남은 잔여주택을 일반공급하는 공고입니다. 당해 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사항은 [3. 입주자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진행합니다.

■ 본 민간임대주택 모집공고는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당해 주택은 1세대 1건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 무효 처리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연 5%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가 전대확인 및 건물점검,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 향후 기금의 취급기관과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기관 등이 당해 주택의 부동산에 설정 및 신탁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임차인은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수수료가 있을 경우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 관리주체가 전대확인 및 건물점검,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향후 기금의 취급기관과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기관 등이 당해 주택의 부동산에 설정 및 신탁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임차인은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관계 법률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에 경과하면 사업주체가 임의로 분양 전환할 수 있으며, 분양가격 및 조건 등은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주택을 우선 분양받기를 희망할 경우 사업주체가 정한 조건에 따라 해당 주택을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분	청약 신청		당첨자 발표	계약진행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시	장소		일시	장소	
우선공급 (선착순)	2024.09.27.(금) ~2024.09.28.(토) 10:00~19:00	● 현장신청→임대사무실	개별안내	2024.09.27.(금) ~2024.09.28.(토) 10:00~19:00	<임대사무실> 천안시 동남구 성황로66, 천안역 필하우스 에듀시티 2단지 203동 1층 임대사무실	대상자 개별 안내 현장에서 선착순 결정
일반공급 (청약홈)	2024.09.25. (수)~10.02.(수) 09:00~17:3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5영업일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PC: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청약홈 어플	2024.10.10.(목)16:00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PC: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청약홈 어플	**2024.10.11.(금) ~2024.10.13.(일) 10:00~19:00**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의해 신청타입별 무작위 결정**
현장공급	2024.10.25.(금) ~2025.10.26.(토) 10:00~19:00	● 현장신청→임대사무실	개별안내	2024.10.25.(금) ~2025.10.26.(토) 10:00~19:00		잔여세대가 존재할 경우 현장에서 선착순 결정

※임대사무실 : 천안시 동남구 성황로66, 천안역 필하우스 에듀시티 2단지 203동 1층 임대사무실 (방문 원할시 **방문예약 필수**) ☎전화((1577-5163)

★샘플하우스 운영중이오니 방문예약하시면 세부상담 및 샘플하우스를 직접 보실수 있습니다.

※ 저층의 낮은 공급가 계약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우선공급 및 현장공급으로만 가능하오니 임대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O	O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O	O	X	X	X	X

*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내역 및 임대조건

■ 공급위치 및 공급규모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로66 천안역 필하우스 에듀시티2단지 (문성원성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3층~지상 28층 아파트 16개동 전체 252세대 중 민간임대주택 61세대, 금회 우선공급 3세대 일반공급 15세대**

▶ 입주예정월 : 2024년 11월

▶ 공급대상

(단위:㎡, 세대)

주택관리번호	타입	일반공급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면적포함)	계약면적	세대당지분
2024950061	39	15	39.6978	15.4148	36.5361	91.6487	23.6767

· 2016.11.15.「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 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상가) 및 보육시설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들의 운영권 및 수익 부분은 임대인의 권리로서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계산심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보증금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제44조 제2항에 따라 5%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단,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보수 및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하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군·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상기 주택별 임대조건은 동별, 층별, 향별, 일조량 등을 반영하여 임대사업자가 책정한 금액이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 후 2년 동안 유효합니다. 단,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동호별 임대조건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보증금 인상분 미납 연체료, 관리비 등 제반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위약금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약금 = 월간 총 임대료(해약 당월 기준의 임대료) X 2년 X 10%

※ 월간 총 임대료 = [(해약 당월 임대보증금 X 해약 일에 가장 가까운 시기의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 이자율) + 해약 당월 1개월분 임대료]

▶ 임대기간

·이 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은 8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시점은 세대마다 다를 수 있음)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한 2년 단위로 최대 8년까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및 납부일정

- [일반공급 15세대]
- 의무임대기간 : 8년
- 임대차계약기간 : 2년

(단위 :원)

대상세대					임대보증금	계약시	입주시	비고
동	타입	층	라인	세대수		계약금(10%)	잔금(90%)	
203동	39	1층	3,4	1	₩145,000,000	₩14,500,000	₩130,500,000	
		2층~5층	6	3	₩150,000,000	₩15,000,000	₩135,000,000	
		6층~10층	1,4,5,6	4	₩153,000,000	₩15,300,000	₩137,700,000	
		11층~13층	2,4,5,6	4	₩155,000,000	₩15,500,000	₩139,500,000	
		14층~17층	2,3,4	3	₩158,000,000	₩15,800,000	₩142,200,000	

·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임대사업자(임대인)이 책정한 금액으로 청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지정 기간에 입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 개시 후 2년이 경과될 때마다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에 해당 경우에는 조기 분양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 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 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대출금 등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 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확정판결에 의한 제3자의 채권추심 등이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 임대주택 분양 전환 기준

· 당해 임대주택은 8년 동안 임대 후 희망자에 한해서 분양 전환이 되는 임대주택입니다. 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 분양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우선분양에 따른 선택권을 갖습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될 경우,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가격 및 조건은 부동산 매매 상관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결정합니다.

· 임차인이 우선 분양을 희망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제3자에게 임의 분양합니다.

2. 청약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어 반드시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신청금을 납부하신 분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약신청자는 입금자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신청 유형별(타입) 900%의 예비당첨자를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신청 자격

구분	신청자격요건
우선공급 (3세대)	-청년·신혼부부·다자녀 대상 (선착순)
일반공급 (15세대)	-모집공고일(2024.09.20.)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 청약신청 불가)만 청약 신청 할 수 있음. -청약신청은 1인 1실(건)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현장공급	- 잔여세대가 존재 할 경우 현장공급으로 전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 ①항 2호에 의하여 임차인을 선정한다.

▶ 우선공급 (3세대) -
- 청년(만 19세~34세 무주택자),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다자녀 대상(2자녀이상) **★임대사무실로 문의**

▶ 현장공급 -
- 법인회사, 외국인(한국 거주 1년이상, 거주민증 소지자), 유주택자 무관, **★임대사무실로 문의**

▶ 일반공급 (15세대) - 일반공급 청약접수 및 당첨자 발표(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진행합니다.

※ 저층의 낮은 공급가로 계약을 원하는 경우는 우선공급 및 현장공급만 가능하오니 해당자는 임대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유의사항

·당해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여부,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신청 타입별 900%를 무작위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샘플하우스 운영중이오니 현장방문예약하시면 세부상담 및 샘플하우스를 직접 보실수 있습니다. (☎1577-5163)

3.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및 장소 (방문 원할 시 **방문예약을 필수**로 하며,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신청 자격	접수 일자	당첨자 발표 일자
우선공급	2024.09.27.(금) ~ 2024.09.28.(토) 2일간	2024.09.27.(금) ~ 2024.09.28.(토) 2일간 대상자 개별 안내 현장에서 선착순 결정
일반공급	2024.9.25.(수)~10.2(수) 09:00~17:3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5영업일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취급은행 전 지점(제주, 씨티 제외)	당첨자발표일 : 2024. 10. 10(목) 16:00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https://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현장공급	2024.10.25.(금) ~ 2024.10.26.(토) 2일간	2024.10.25.(금) ~ 2024.10.26.(토) 2일간 대상자 개별 안내 현장에서 선착순 결정

▶ 일반 공급 신청 및 유의 사항

1. 일반공급자 청약 신청금 납부방법

구분	청약 신청금	내용
모든 타입 공통	100,000원 (금 일십만원)	·청약 신청 시 : 청약홈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납부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신한,IBK기업,수협,농협,우리,SC제일,KEB하나,아이엠뱅크,부산, 광주,제주,전북,경남,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 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일반공급 대상자에 한하여 2024.10.10.(목) 16:00 이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청약신청은 청약신청금을 납부하신 분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약신청자는 입금자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청약접수 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인터넷 청약 서비스 안내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이용안내	·거래은행 인터넷뱅킹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 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10만원)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 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각 청약신청일의 신청마감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청약신청 도중 17:30이 경과하면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일 당일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 내역의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청약통장 취급은행 전 지점)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 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 신청금
• 청약 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 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td></tr>
<tr><td></td><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민간임대청약 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단, 제주, 씨티 제외)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 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공급에 따른 제출서류는 임대공고일(2024.09.2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주택은 1세대 1건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 무효 처리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에 따른 일자는 조정이 가능하며, 대단지 신축아파트 첫 입주이므로 계약 후 잔금일 전에 입주청소에 따른 세대를 오픈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비당첨자 선정 : 신청 타입별 900%를 무작위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샘플하우스 운영중이오니 현장방문예약하시면 세부상담 및 샘플하우스를 직접 보실수 있습니다. ☎1577-5163

3. 일반공급 청약 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 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 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됨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첨자의 청약 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 가능)

·청약 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당첨자 발표

•일반공급은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타입별 무작위 결정합니다.

•예비당첨자 선정 : 신청 타입별 900%를 무작위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 확인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구 분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우선공급	2024.09.27.(금) ~ 2024.09.28.(토) 개별안내 및 현장확인	현장에서 확인(선착순 결정)
일반공급	발표일 : 2024.10.10. (목) 16:00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당첨조회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당첨조회 메뉴에서 조회일 기준 최근 5일 이내 당첨발표한 단지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현장공급	2024.10.25.(금) ~ 2024.10.26.(토) 개별안내 및 현장확인	현장에서 확인(선착순 결정)

4. 계약 일정 및 장소

▶계약 일정 및 장소

구 분	계약 일자	계약 장소
우선공급	2024.09.27.(금) ~ 2024.09.28.(토) 10:00 ~ 19:00 (2일간)	★장소: 천안시 동남구 성황로66, 천안역 필하우스 에듀시티 2단지, 203동 1층 임대사무실 ★샘플하우스 운영 (세부상담 및 샘플하우스를 직접 보실수 있음/ 방문예약 必) ☎ 1577-5163
일반공급	2024.10.11.(금) ~ 2024.10.13.(일) 10:00 ~ 19:00 (3일간)	
현장공급	2024.10.25.(금) ~ 2024.10.26.(토) 10:00 ~ 19:00 (2일간)	

· 방문예약 후 현장방문 가능함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계약시 구비서류

본인 계약시 (공통)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및 인감증명서 각1통, 인감도장 ·계약금 입금증(무통장 입금증 또는 이체 영수증 등)
대리인 계약시 (배우자 포함)	·본인 계약시 구비서류 일체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사본, 대리인 도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계약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상기 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잔여 세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호 ①항 2호 규정에 임대인이 임의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액	납부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비고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계약금, 잔금 납부계좌 동일)	상기 임대조건 호수 및 금액 확인 후입금	100-033-724421	신한은행	문성원성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2명	★입금예시 105동207호 홍길동 ->**홍길동 5-207**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어떠한 임대보증금 납부 방법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않고 무효가 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무통장 또는 온라인으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임대인은 약정일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매월 임대료가 있을 경우 지정된 일자에 위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임대인은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의 회수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당해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매각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아파트의 의무임대 기간은 10년으로 임대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함.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할 수 있음.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에 따른허가)

5. 입주 일정 안내

입주 지정 기간 : 2024년 11월 1일~2025년 1월 31일

▶입주 일정 안내
·입주 지정 기간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개별 연락드립니다.
·2024년 10월 10일(목) 당첨자 발표 이후 일반공급자 적격자에 한하여 잔금을 선납하신 당첨세대는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의 납부 순서는 계약금, 잔금 순서로 납부하고, 잔금 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계약 체결 시 안내한 납부 금액을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은 해지 위약금으로 대체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 시 잔금 납부 영수증(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입주 7일 전까지 임대인에게 입주 일정을 통보 바랍니다.

·토,일, 공휴일에 입주를 원하는 분은 입주 전 평일(10:00~16:00)까지 잔금 납부 및 완납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이후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입주가 가능하며 청소일 또는 입주일부터 월 임대료 및 관리비가 기산됩니다.
·지정된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월 임대료, 관리비, 잔금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잔금을 납부 기한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연체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체 기간	1개월 이하	1개월 초과
적용 연체요율	5%	해지

6. 유의사항 및 추가제공품목

▶ 일반 공통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임대인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청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천안시 및 그 외 지역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 조건과 당해 주택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청약 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 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 주민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 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 시설 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산위탁사, 수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 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여건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층 또는 일부세대의 경우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가능하며, 사다리차 이용시 관리사무실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설치제공 품목 - 당해 주택은 별도의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이 없습니다

▶ 준공검사 확인 사항 - 2022년 04월 19일 사용검사(공동주택)를 득하였으며, 계약시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 한성건설 홈페이지 → feelhaus.co.kr

■ 임대인 및 시공회사

구 분	회 사 명	등록번호
임 대 인	문성원성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임대사업자등록 : 2021-천안시-임대사업자-439 법인등록번호 : 161571-0005362
시 공 사	주식회사 한성건설	사업자등록 : 312-81-18076 법인등록번호 : 161511-0015143

■임대사무실 위치 : 천안시 동남구 성황로66, 천안역 필하우스 에듀시티 2단지 203동 1층 임대사무실
■ 임대 문의 : ☎1577-5163/ 010-3560-5163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사무실 : 천안시 동남구 성황로66, 천안역 필하우스 에듀시티 2단지 203동 1층 임대사무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천안역 필하우스 에듀시티 2단지 위치도



임대사무실 주소 : 천안시 동남구 성황로66, 천안역 필하우스 에듀시티 2단지 203동 1층 임대사무실 (☎ 1577-5163)

샘플하우스 방문가능합니다. 전화주셔서 방문예약 필히 부탁드립니다 !

내부 타입

평수와 구조는 동일하나 내부 타입이 중문타입과 가벽타입으로 두가지 있습니다. (우선공급시 선택가능)



